

가 축 분 뇨 의 관 리 및 이 용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4. 1.



환경부

1. 개정이유

액비 살포시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대하여는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고체연료 성분 기준 명확화(안 별표 4의2)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깔짚 등이 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에는 저위발열량 기준에서 예외로 하도록 단서 신설

나. 액비 살포기준 합리적 정비(안 별표 5)

- 1)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에는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2)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용어 정비

다. 가축분뇨처리업 방류수 측정주기 기준 마련(안 별표 6)

가축분뇨처리업자의 방류수 측정주기를 3개월마다 실시하도록 기준을 마련함

라.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작성방법 개선(안 별표 6, 별표 10)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을 매일 작성하도록 하던 것을 위탁·반출 및 살포한 날에 작성하도록 함

마. 행정처분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7)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가축사육 과정에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 수분조절제 등이 가축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 단서 중 “지정지역 또는”을 “지정지역,”으로, “골프장”을 “골프장이나 시설 원예 또는 과수 농업을 하는 땅”으로 하고, 제4호의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을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으로 한다.

별표 6 제6호나목1) 중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로 하고, 같은 표 제7호 중 “매일”을 “가축분뇨를 위탁하거나 퇴비·액비를 반출·살포할 때마다”로

한다.

별표 7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별표 10 제2호아목 중 “매일”을 “가축분뇨를 위탁하거나 퇴비·액비를 반출·살포할 때마다”로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제11조의2 관련)

구분		단위	기준
길이 (원형인 경우에는 지름)		mm	40 이하
저위발열량		kcal/kg	3,000 이상 (가축분뇨에서 일부 에너지를 회수한 후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가공하는 경우에는 2,000 이상)
수분		%	20 이하
회분		%	30 이하
황분		%	2 이하
금속 성분	수은(Hg)	mg/kg	1.2 이하
	카드뮴(Cd)		9.0 이하
	납(Pb)		200.0 이하
	크로뮴(Cr)		70.0 이하

※ 비고

1. 성형제품의 형태는 펠릿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저위발열량(低位發熱量: 연료의 전체 발열량에서 수증기의 숨은열을 뺀 연료의 유효한 발열량)은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않은 상태(가축사육 과정에서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된 수분조절제 등이 가축분뇨에 섞여 배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기준으로 한다.
3. 회분[灰分: 유기질이 회화(灰化)된 뒤에 남은 무기물 또는 불연성 잔류물], 황분(黃分: 석탄 등에 불순물로 들어 있는 물질로서 유기 유황, 황산염 등으로 이루어진 것), 금속성분은 건조된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화력발전시설에서 사용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경우에는 회분이 30%를 초과할 수 있다.

액비의 살포기준(제13조 및 제23조의2 관련)

1. 액비는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腐熟: 썩혀서 익힘)시켜 악취는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거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액비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가 흘러내리지 아니하고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나 시설원에 또는 과수농업을 하는 땅**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우 및 액비가 흘러내리는 경사지에서는 액비를 살포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
3.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비료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
4. **액비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량 절감 및 액비를 계속 쓴 데에 대한 사용량 조절을 위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제15조 관련)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처리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습도·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퇴비·액비 또는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 장소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처리시설 운영,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등을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관리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생산되는 퇴비·액비, 제조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하여 가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나목의 구분에 따른 주기마다 측정 또는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측정 또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할 것
- 가. 측정자 또는 검사자

- 1) 법 제13조제1항 전단 및 별표 4의 방류수수질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 2)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 및 영 별표 3의 퇴비액비화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시험연구기관 또는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 3) 법 제13조의2제2항 및 별표 4의2의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 등에 관한 기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나. 측정주기 또는 검사주기

1) 정화시설: 가축분뇨처리업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6개월

2) 퇴비·액비화시설 및 고체연료화 시설: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6개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1년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마릿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가축분뇨를 위탁하거나 퇴비·액비 반출 및 살포시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은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11. 가축을 방목 사육하는 자는 발생된 가축분뇨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저장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1년(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12호·제13호, 제32조제1항제1호·제3호·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

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 5)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그 밖에 시설설치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 제4호	폐쇄명령			
5)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5호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6호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1개월	폐쇄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폐쇄명령	
7)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7호				
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1개월 경고	2개월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 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사용중지 명령
8)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 설을 설치·변경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8호			1개월	2개월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허가취소 또는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1개월 개선명령	2개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사용중지 명령
9)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 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9호			1개월	2개월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1개월 경고	2개월 사용중지 명령	3개월 사용중지 명령
10)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0호			1개월	2개월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 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허가취소		
나)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 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		경고	경고	사용중지 명령	사용중지 명령
11)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 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1호	경고	사용중지 명령	1개월 사용중지 명령	2개월 사용중지 명령
12)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 인·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 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 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 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 치·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 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 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 정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2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개월	3개월
13)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 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 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8조 제1항제13호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 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 은 경우	법 제27조 제 6항제1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2)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법 제27조 제	경고	처리금지	처리금지명령	폐쇄명령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운영한 경우	6항제2호		명령 1개월	3개월	
3)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3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4)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7조 제6항제4호	경고	처리금지 명령 1개월	처리금지명령 3개월	폐쇄명령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경고	허가취소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5)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처리시설을 사용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법 제32조 제1항제6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는 행위를 한 경우					
7)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7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8)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8호				
가) 수집·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그 밖의 수집·운반 및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9호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0)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나)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라)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마)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12)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3개월 허가취소	6개월	
1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4)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의 수집·운반·처리 및 시설관 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 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5)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 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본문	허가취소			
16)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 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 법,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6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영업정지
17)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 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계·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 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7호	경고	영업정지	영업정지	

18)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가)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나)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19)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9호	영업정지 1개월 경고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3개월	허가취소 영업정지 6개월

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등록취소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등록취소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가)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나) 사무실이거나 실험실이 없는	법 제35조 제1항제4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록취소

경우 다)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 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 달하게 된 경우		경고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4)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5호	경고	등록취소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 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 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6호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 을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을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라)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6)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 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7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7)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	법 제35조 제1항제8호	등록취소			

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 우					
8)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 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9) 위 8)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10)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9호				
가)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 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허가취소
나)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 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기준(제28조 관련)

1. 설치기준

- 가. 제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 나. 수집장비는 흡인식장비여야 한다. 다만, 흡인식장비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식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수집장비에는 수집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라. 수집장비는 가축분뇨에 의하여 부식되지 아니하고, 운반 도중에 가축분뇨가 흘러나오거나 악취가 나지 않는 구조여야 한다.

2. 운영기준

- 가. 가축분뇨의 저장·처리장소에는 쥐 및 파리·모기 등 해충이 발생·번식하지 아니하도록 약제를 살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나. 가축분뇨를 저장·처리하거나 생산된 재활용(판매등을 포함한다)되기 전까지는 처리시설·보관시설 및 장비로부터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시설 및 장비등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라. 수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집·운반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 가축분뇨를 저장시설이 아닌 곳에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재활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바. 운반차량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사. 처리시설로부터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

검사 또는 분석하거나 「비료관리법」 제4조의2에 따른 비료 시험연구 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분석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아. 퇴비·액비 관리내역 및 액비 살포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에 **가축분뇨를 위탁하거나 퇴비·액비 반출 및 살포시에**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자.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차. 액비를 살포하려는 자는 초지 또는 농경지의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의 임차인(토지소유자로부터 액비의 살포동의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미리 액비의 살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 재활용 ☐ 재활용변경 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기재)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재활용 대상물질		☐ 분 ☐ 요 ☐ 분뇨(혼합)			
재활용 방법		☐ 액비화 ☐ 퇴비화 ☐ 기타()			
1일평균 취급량		m ³ (톤)			
1일평균 생산량		m ³ (톤)			
주요수집지역					
초지 또는 농경지	소재지			면적(m ²)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또는 제2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에 관한 설명서 2.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확보계획서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계획서 4. 재활용시설과 장비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 중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의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 계약서나 시설이용 확인서)와 시설의 도면 5.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비료관리법」 제14조에 따라 보증 표시를 하거나 보증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상
- 가축분뇨를 재활용을 목적으로 1일 400킬로그램 이상 처리하려는 자
- 재활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활용을 목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재활용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지
신청인		시·군·구 민원실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필요시)		시·군·구 가축분뇨 담당부서		